

추심없는 채무조정 실행을 위한 업무 협약서

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와 한국자산관리공사(이하 “공사” 라 한다)는 (주)국민행복기금(이하 “기금” 이라 한다) 및 공사 채무자의 추심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재기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(이하 “협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센터와 공사가 「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」(금융위원회, '19.5.24.)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채무자의 추심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상호신의) 센터와 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.

제3조(협력내용) 센터와 공사의 상호 협력 범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.

- ① 기금 및 공사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상담
- ② 신용회복중인 기금 및 공사 채무자에 대한 추가감면 노력
- ③ 동 제도 적극 홍보를 통한 채무자 편익 증진 노력

제4조(정보보호 및 비밀엄수의 의무) 센터와 공사는 본 협약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·획득·공유된 정보 또는 업무상 기밀에 대하여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5조(효력발생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은 각 기관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유효하다.

제6조(기타)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거나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각 기관은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. 8. 8.



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

가계지원본부장

박정만

천정우

천정우